

2)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(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)에 재심의 결정을 하도록 함

다.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신설(안 제34조의2 신설)

1)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

2)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. 다만,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

3)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(재심의 신청 포함)을 한 날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

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

- 전자우편 : mprior22@korea.kr

- 팩스 : 044-203-4787

5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(전화 044-203-5894, 팩스 044-203-478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환경부공고제2020-924호

「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(환경부고시 제2019-63, '19.4.1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6일

환 경 부 장 관

「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」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(라벨)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먹는샘물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하여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, 소포장제품의 경우 소포장면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면 제품은 라벨부착의무 제외
- 나. 먹는샘물 표시사항은 주표시면과 별도구획란에 구분하여 표시하되, 별도구획란 표시사항 일부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별도구획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 가능
- 다. 먹는샘물 대용량 용기(10L이상, PC제품)의 경우 몸통에 표시하던 표시사항을 용기 병목 부분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
- 전자우편/팩스 : lkylky@korea.kr/ 044-201-7130

라.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 법령/정책/ 환경법령/ 입법·행정예고)에 게재되어 있음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(전화 044-201-7118, 팩스 044-201-71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환경부공고제2020-926호
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제2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6일

환 경 부 장 관

○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

등록번호	단체명칭	사무소 소재지	대표자성명	등록년월일	주된사업	연락처	주관과	등록구분
149	(사)한국 환경포장 진흥원	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현로 46, 2층 260호(양재동, 블루펄)	이명용	2012. 2. 23.	- 포장관련 친환경정책 및 정부시책에 관한 진흥·홍 보 사항 - 친환경포장 기술과 포장디 자인 관련 포장콘테스트, 전시에 관한 사항 등	02-865 -7880	자원순 환경책 과	변경 (대표자, 소재지)